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面
---------------------------------	----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의안 번호	809
----------	-----

제출년월일 : 2001. 4.
제 출 자 : 안재홍 의원 외 4인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거나 집행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안제시 등의 광장이 되고 있는 구정질문 제도는 열린 행정과 위민 행정의 표상으로 의의 활성화가 적극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도에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임시회 때에도 수시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는 반드시 집행부의 답변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의원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나 평소 소신 피력 등의 폭넓은 의정철학 전개에는 다소 제약이 수반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 동안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답변은 필요 없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임

2. 주요골자

- 제3절 「발언」 편에 '5분 자유발언'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
 - 발언시기 :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 상정 전에 실시(제2항)
 -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제3항)
 -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제3항)
 - 발언신청 : 의장에게 미리 신청(제4항)
 - 발언순서 : 의장이 정함(제4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63조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5분 자유발언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④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절	발 언	제3절	발 언	
제27조(발언의 허가) (생략)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발언의 장소) (생략)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발언의 계속) (생략)		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0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	-----
	<단서 신설>		다만,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언횟수의 제한) (생략)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생략)		제32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5분자유발언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이내로 하며,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④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3조(보충보고) (생략)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삭제 1992. 4. 26>				
제35조(의장의 토론참가) (생략)		제35조	(현행과 같음)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